

1. 개정이유

수소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9조의15가 신설됨에 따라, 이에 대한 지급단가, 지급한도량,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보조금의 정의(안 제4조)

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“화물자동차 수소 연료 보조금”을 포함

나.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한도량(안 제7조)

톤급구분	10톤이하	12톤이하	12톤초과
월 지급한도량(kg)	807	913	1,284

다.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단가(안 제8조)

지급단가는 4,100원/kg으로 하며,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

라. 수소연료보조금의 신청방식(안 제14조)

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유류구매카드가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의 경우 서류로 신청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('20.7.16)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2항”을 “제43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(이하 각각 “경유”, “LPG”라 한다)을”을 “자동차용 경유,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(이하 각각 “경유”, “LPG”, “수소”라 한다)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, 제10호,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“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”

6. “주유업자”란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.

10. “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”(이하 “한도관리 시스템”이라 한다)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·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

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·운영(위탁을 포함한다)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(1588-8713), 인터넷(www.truckcard.kr)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1. “주유량 확인 시스템”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(“충전소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(“충전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시 주유기(“충전기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(“충전량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

13.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·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가보조금”은 “수소 연료보조금”으로, “유류”는 “수소”로, “유류비”는 “수소 연료비용”으로 본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경유 또는 LPG”를 “경유, LPG 또는 수소”로 한다.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.

تونج구분	10톤이하	12톤이하	12톤초과
월 지급한도량(kg)	807	913	1,284

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,100원/kg으로 한다. 다만,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가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

제22조제2호 중 “지급을 신청”을 “지급을 신청(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,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LPG”를 “LPG [] 수소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유류구매량(ℓ)”을 “연료구매량(ℓ /kg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소연료보조금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4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수소화물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·방법·절차 등을 규정하고,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43조제2항 및 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<u>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</u> (이하 각각 “경유”, “LPG”라 한다)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<u>자동차용 경유,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(이하 각각 “경유”, “LPG”, “수소”라 한다)</u> <u>를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유가보조금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.	제4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.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2. ~ 5. (생략)

6. “주유업자”란 「석유 및 석유
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
2조제3호에 따른 “주유소”를
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
및 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
항제1호나목에 따른 “액화석
유가스 충전사업”(이하 “충전
소”라 한다)을 하는 자를 말한
다.

7. ~ 9. (생략)

10. “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
통합 한도관리 시스템”(이하
“한도관리 시스템”이라 한다)
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
게 주유·판매 내역 및 유가
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
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

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
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
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
해 주는 “화물자동차 수소
연료보조금”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“주유업자”란 「석유 및 석유
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
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
자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
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
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
자 및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
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
사업자를 말한다.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“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
시스템”(이하 “한도관리 시스
템”이라 한다)이란 화물차주
및 주유업자에게 주유·판매
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
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
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

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·운영(위탁을 포함한다)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(1588-8713), 인터넷(www.truckcard.kr)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1. “주유량 확인 시스템”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(“충전소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 시 주유기(“충전기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(“충전량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

12. (생략)
<신설>

로 구축·운영(위탁을 포함한다)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(1588-8713), 인터넷(www.truckcard.kr)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1. “주유량 확인 시스템”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(“충전소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(“충전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시 주유기(“충전기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(“충전량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

12. (현행과 같음)

13.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·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가보조금”은 “수소 연료보조금”으로, “유류”는 “수소”로, “유류비”는 “수소

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(생략)

2.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(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함)

3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조(지급한도량 설정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연료비용”으로 본다.

제6조(지급 일반원칙) ① -----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경유, LPG 또는 수소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급한도량 설정) ① ~ ③

(현행과 같음)

④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8조(지급단가 산정) 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제14조(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)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톤급구분	10톤이하	12톤이하	12톤초과
월 지급한도량(kg)	807	913	1,284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제8조(지급단가 산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,100원/kg으로 한다. 다만,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4조(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가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

4. (생략) 제22조(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)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<u>지급을 신청</u> 3. (생략)	<u>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22조(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) 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급을 신청(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,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)</u> 3. (현행과 같음)
--	---